

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민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9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2월 28일

발 의 자 : 양민규, 노식래, 서윤기, 강동길,  
이광호, 이태성, 김호진, 이성배,  
고병국, 김호평, 권순선, 봉양순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의원 공무국외활동 출장 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전문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에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의 내실성을 추가함(안 제7조제1항제7호).
-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).
-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(안 제12조제1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공무국외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의 내실성

제8조제1항 중 “제11조제1항에” 를 “제10조제1항에” 로 한다.

제10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무국외활동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2조 제목을 “공무국외활동보고서 등 제출” 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공무국외활동보고서” 를 “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7조(심사기준) ① 생 략</b> 1.~6. 생 략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7.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~④ 생 략</p>	<p><b>제7조(심사기준) ① 현행과 같음</b> 1.~6. 현행과 같음 7. <u>공무국의활동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의 내실성</u> 8. ----- ②~④ 현행과 같음</p>
<p><b>제8조(회의) ①</b>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<u>제11조제1항</u>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의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. ②~③ 생 략</p>	<p><b>제8조(회의) ①</b> ----- ----, <u>제10조제1항</u>에 ----- -----. ②~③ 현행과 같음</p>
<p><b>제10조(공무국의활동계획서 제출 등) ① 생 략</b> <b>&lt;신 설&gt;</b></p> <p>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의활동 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</p>	<p><b>제10조(공무국의활동계획서 제출 등) ① 현행과 같음</b> ② <u>공무국의활동계획서에는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③ ----- -----.</p>
<p><b>제12조(공무국의활동보고서 제출) ①</b> 공무국의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20일 이내에 <u>공무국의활동보고서</u>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<u>공무국의활동보고서</u>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. ③ 의장은 <u>공무국의활동보고서</u>를 의회 전문도서관에 소장·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.</p>	<p><b>제12조(공무국의활동보고서 등 제출) ①</b> ----- ----- <u>공무국의활동보고서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</u>----- ② ----- <u>공무국의활동보고서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</u>----- ③ ----- <u>공무국의활동보고서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</u>----- -----.</p>



○ 비용추계 세부내역

1) 전문가 간담회 참석 수당 ≙ 28,000천원

- 총비용 = 5,600천원(연간비용) × 5(년) = 28,000천원

· 연간 참석수당 : 350천원(2시간) × 8건 × 2명 = 5,600천원

〈최근 4년간 의원 공무국의활동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〉

구분 \ 연도	2018	2017	2016	2015	평균
위원회 심의 건수	2건	14건	5건	10건	8건

※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자료

[참고자료 :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]

(단위 : 천원)

등 급	대 상 (전·현직 포함)	지 급 액		비 고
		기본1시간	초과시간	
일 반 1 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학(교) 교수</li> <li>○ 컨설턴트(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)</li> <li>○ 관검사, 변호사, 전문의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</li> <li>○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이상</li> <li>○ 예술인, 종교인, 언론인</li> <li>○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</li> <li>○ 기초지방의회의원</li> <li>○ 3급이상, 4급(박사학위 소지) 공무원</li> <li>○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·예술, 체육, 언론, 종교, 시민 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</li> </ul>	230,000	120,000	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정한섭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강평선

☎ 02-2180-7932

e-mail : kangdan@seoul.go.kr